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I . 제안경위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송아량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273호

다. 제출일자 : 2018. 12. 11.

라. 회부일자 : 2018. 12. 28.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정진철 의원 외 11명

나. 의안번호 : 제324호

다. 제출일자 : 2019. 1. 2.

라. 회부일자 : 2019. 1. 23.

3.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경만선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325호

다. 제출일자 : 2019. 1. 21.

라. 회부일자 : 2019. 1. 23.

II. 제안사유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활동에 불편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교통시설임. 이에 따라 서울수도 저상버스 확충 및 지하철 시설 개선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교통약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 국가가 주도한 제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해 있는 등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대도시권 광역행정권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 광역행정권역 간 대중교통 연계는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시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같은 맥락으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
-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강조가 필요함. 이에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임

3.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

- 최근 도시철도 선로에 무단 침입하여 열차 운행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열차 운행방해를 넘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시민의 의무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시장의 책무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포함시킴(안 제3조)
- 나.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체계적 확충을 명시함(안 제12조)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 가.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신설(안 제3조제1항 제7호)
- 나. 택지개발지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신설(안 제3조제1항제8호)
- 다.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신설(안 제3조제1항제9호)

3.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

- 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 신설(안 제4조제3항)

IV. 참고사항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 4. ~ 2019. 1. 11.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원안 수용¹⁾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을 확충·개선토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구체적인 책무가 포함 되어 있으나,

-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 유사 내용을 재 언급함이 대중 교통 서비스가 교통약자와 시민을 별도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하는 서울시 의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안 수용함

1) 교통정책과-1003(2019.1.17.)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련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 28. ~ 2019. 2. 7.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수정 가결²⁾

-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는 3개 시도 및 중앙정부 공동 추진 필요
- 현행 조례의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는 서울 전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특정사업 별도 명시 불필요
-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관련 상위법에 기명시하고 있어 조례 포함 가능

2) 교통정책과-2076(2019.2.7.)

3.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철도 안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 28. ~ 2019. 2. 7.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원안 수용³⁾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4조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인용하여 제정되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로 시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제안 내용은 시민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제4조 제2항의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의무사항에 부합하며 시민의 사회적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조항을 추가하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안 수용함

3) 교통정책과-2076(2019.2.7.)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1.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교통약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대상에 교통약자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복지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 전체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하고 택지개발지구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등 시스템적 측면은 물론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연계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대규모 개발 이후 당초 계획된 대중교통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입주민의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서울도심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 외곽 또는 주변 수도권 지역을 주거권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관련 법⁴⁾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NG, 전기 및 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3. 경만선 의원 대표발의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의무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후략)~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4.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5.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6.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검토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 시민의 의무를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5)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닌 현행 조례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